

2025년도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매장) 참여기업 하반기 모집 공고

중소기업의 국내 면세시장·해외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2025년도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매장)」의 참여기업 하반기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1월 13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 사업 명: 2025년도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매장)

☐ 사업목적

-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에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을 설치·운영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진출 지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에서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전시, 인테리어 및 판매를 위한 공간·인력 지원

※ '25년도 하반기 모집 참여기업 입점장소: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제조하거나 취급(유통)하는 기업

☐ 지원기간: 지원일로부터 기본 6개월

※ 6개월 단위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간 지원 가능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필수자격: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에 입점·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제조하거나, 취급(유통·판매)하는 기업

* 가전, 생활용품, 식품, 의류, 패션잡화, 화장품 등

□ 지원 제외 대상

-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 운영 취지에 부적합한 제품

- 수입제품*, 대·중견기업 제품**

* 수입제품은 해외 제조업소를 통한 주문자상표부착 제품(해외 OEM 제품)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신청 중소기업은 OEM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구비·제출해야 함

** 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지원 불가

-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에서의 판매가 제한되는 품목 또는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품목 또는 경우 >

- 의약품, 기업형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1차 식품, 산업재 등
- 부피 또는 무게가 과도하게 큰 제품*,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 소비기한 또는 사용기한·유통기한이 3개월 미만인 제품 등
 - * 부피·무게 제한 세부 기준: 크기가 「55cm x 40cm x 20cm(가로·세로·높이)」를 초과하거나, 무게가 10kg를 초과한 제품은 지원 불가(일반 항공사의 기내 반입 수화물 기준에 따름)
단, 의류 등 접을 수 있는 제품은 접었을 때, 크기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 **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칼·커터·가위 등 날카로운 물품, 무술호신용품 등 무기류, 망치 등 공구류, 160Wh 초과 용량의 리튬배터리를 내장하거나 분리형으로 포함한 제품(고용량 보조배터리 등) 등 항공보안 규정상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 전반
- 지원받고자 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 시 관련 법규에서 의무로 정한 인증 또는 서류가 있을 때*, 이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 * 어린이용 제품(KC 안전인증), 화장품(화장품 책임판매업), 주류(주류판매업) 등
- 제조물(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지원 제외 대상 중소기업 >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 단, 세금 분납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신청 가능
-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상태인 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 도박·사치·향락, 건강 유해 등
- 기업 또는 대표가 언론 및 기타 공적인 채널을 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의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지급 제한 중인 경우
- 신청 사업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 정부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생이 제한되는 간이사업자
- 그 밖에 사업 신청·참가 제한이 필요한 경우로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총괄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3. 모집 개요 (2025년도 하반기)

□ 모집대상

-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한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 중 제2 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매장**에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상품

※ 2025년도 하반기 모집에서 냉장·냉동식품은 모집대상에서 제외함

* 판판듀티프리샵(FANFAN DUTY FREE SHOP)

** 제3·5 매장(제2 여객터미널 동편), 제4·6 매장(제2 여객터미널 서편)

□ 모집규모

- 참여기업 선정 시기의 입·퇴점 등 매장 운영 상황에 따름

※ 참여신청 중소기업 1개사당 최대 5개 상품까지 신청 가능 (한 상품의 색상·사이즈 등이 다양한 경우에는 1개 상품으로 간주 가능하나 가격이 변동되는 사이즈·용량 변경 건은 별개 상품으로 취급됨)

4.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 내 제품 판매공간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전시·홍보를 지원
 - 판매·홍보를 위한 매장 인테리어·연출 및 인력 등 지원
 - 판매촉진을 위한 프로모션 행사 지원
 - 소비자 반응 등 국내 면세시장에서의 시장검증 기회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간접경험을 제공
 - 입점 제품의 외국인 판매분은 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참여 기업의 간접수출실적증명을 위한 구매확인서 발급 지원
- *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어 무역금융, 무역기금 등 수출기업 대상 혜택 활용 가능

□ 지원기간

- 지원일*로부터 기본 6개월
 - ※ 6개월 단위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간 지원 가능
- * 참여기업 선정 통보, 입점절차 안내 후 입점계약일을 지원시작일로 간주함

□ 지원조건

- 참여신청 시 선정된 제품의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 입점 및 납품
 - 면세점 입출고 시 발생하는 물류비용 부담
 - ※ 참여신청 시 선정된 제품에 한해 입점이 가능하고, 납품 시 면세점 전용 상품라벨 부착 필요(참여기업에서 상품라벨 부착이 제한될 시 면세점에서 부착 지원 가능)
 - ※ 선정 제품의 최초 입고가 지원시작일로부터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참여포기로 간주하여 최종 선정 취소 처리 가능
- 입점 제품 판매 시 판매수수료 발생(판매수수료율: 23%, 변동가능)

5.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 신청기간: 2025. 11. 13.~11. 30.

- ※ 신청기간 내 신청서 제출(온라인 신청)한 기업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신청서 접수가 마감되며,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폭주 등으로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신청 완료 필요
- ※ 모집진행 상황 등에 따라 신청기간 변동 가능

□ 신청방법: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 명의의 공동인증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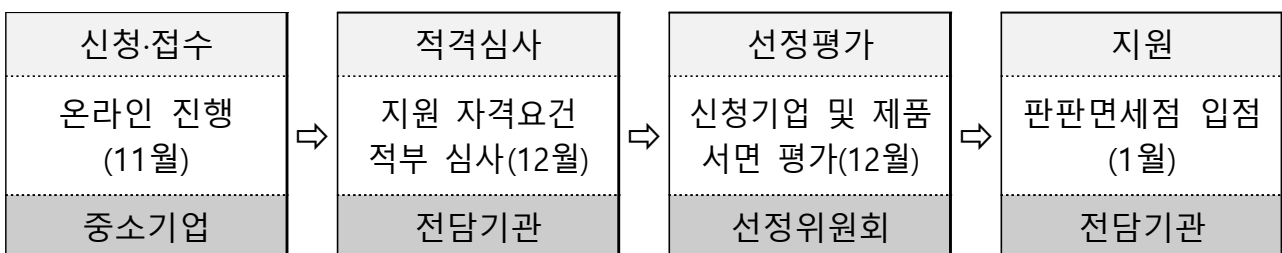
< 온라인 신청 방법 >

회원가입 → 로그인 → 상품 등록 → 해당 지원사업 신청(중기제품 전용판매장(면세매장))
 → 온라인 자가진단/ESG 진단 → 상품 선택 → 제출서류 등록 → 제출버튼 클릭
 ※ 제출 버튼까지 클릭을 완료해야 정상 접수됨을 유의

- ※ 신청 시 면세점 입점을 희망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상품 등록 및 상품 선택 진행 필요
 (참여 신청 상품은 최대 5개까지 가능)

□ 선정절차: 총 2단계의 심사·평가를 통해 참여기업 선정

< 참여기업·입점제품 선정절차 및 일정(안) >



□ 심사·평가 방법 및 내용

- (1단계. 적격심사) 참여신청 기업·제품의 지원가능 품목 여부,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등 신청자격 요건에 대한 적부심사
- ※ 심사방법: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전담기관)에서 제출서류 바탕으로 적부심사

- (2단계. 선정평가) 적격으로 판정된 기업·제품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제출서류 및 등록·선택한 상품정보 등을 바탕으로 서면평가
 - 가점우대사항 해당 기업은 서류 제출 시 최대 5점까지 가점 인정
 - 선정위원회의 산술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70점 이상 획득 기업을 고득점 순으로 참여기업 및 입점제품으로 선정
- ※ 선정위원회: 전담기관 외부의 유통판로 전문가로 구성

< 선정위원회 평가 기준(안) >

구 분	평가항목				가 점
	상품우수성	판매적합성	기술우수성	수출잠재성	
배 점	20점	40점	20점	20점	5점

* 평가항목 등 평가 기준은 예고 없이 변동 가능

□ 제출서류

○ 공통 필수서류

제출서류	비 고
① 참여신청서 ※ 신청서 내 신청제품정보는 대표상품 1개만 작성하여야 함	※ [판판대로 내 해당 공고 등]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제출
② 참여신청 약약서	
③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④ 신규입점 제안상품 리스트 ※ 온라인 신청 시 선택한 상품(최대 5개)과 동일 상품을 작성하여야 함	
⑤ 중소기업확인서 ※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접수일 기준 유효해야 함	※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⑥ 사업자등록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발급처: 정부24 or 홈택스
⑦ 국세 납세증명서 ※ 증명서가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본이어야 함	※ 발급처: 정부24 or 홈택스
⑧ 지방세 납세증명서 ※ 증명서가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본이어야 함	※ 발급처: 정부24 or 위택스
⑨ 최근 3년의 표준재무제표증명(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불가 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제출 ※ 필수 제외 대상: 접수일 기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발급처: 정부24 or 홈택스

※ ⑤, ⑥, ⑦, ⑧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참여신청 페이지에서 자료연계를 통해 제출 대체 가능

○ 추가 필수서류(신청 기업·제품별 해당 서류)

- (업종별 서류) 신청 상품의 생산여부, 생산·판매 형태에 해당하는 서류

※ 아래 표(세부서류)에서 신청 기업·상품에 해당하는 서류를 필수 제출하여야 함

< 업종별 필수제출 세부서류 >

업 종		제출서류
제 조	자체생산	■ 공장면적 500㎡ 이상인 경우 ▶ 공장등록증명(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 공장면적 500㎡ 미만인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사본) ※ 공장등록을 한 경우, 공장등록증명(또는 공장등록증 사본)으로 제출 가능
	외주생산	■ OEM/ODM 계약서 등 신청기업-생산처 간 상품생산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사본)
도소매		■ 총판계약서 등 상품공급자와의 계약서(사본) ※ 해외생산 제품은 「제조사-해외생산처 간의 OEM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사본)」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공장등록증명」은 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고, 참여신청 페이지에서 자료연계를 통해 제출 대체 가능

- (품목별 서류) 신청 상품에 해당하는 각종 등록·신고 서류(사본)

※ 아래 표(세부서류)의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품목별 서류 제출 불필요
(가정용 섬유제품 등 안전기준 준수대상에 해당하는 품목 등)

< 품목별 필수제출 세부서류 >

품 목	제출서류
생활용품	■ KC인증서 ※ 인증서의 세부 종류(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신청제품의 제출 대상 해당 여부는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 등을 참고)
어린이제품	
전기용품	
식품	■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 해외 OEM 생산한 경우, 「수입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제출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 의약외품 품목허가증 또는 의약외품 품목신고증
주류	■ 주류판매업 면허증 ※ 면허 발급 내용이 주류도매업이어야 함
화장품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

○ 선택서류(가점사항 해당 시)

- 가점 확인서*, 가점 증빙서류

※ 가점확인서와 가점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했을 경우에만 가점 인정

* [판판대로 내 해당 공고 등]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제출

□ 가점우대사항 및 증빙 제출서류

우대사항	가 점	제출서류 및 세부내용
①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여성기업	1점	▶ 여성기업확인서 ※ 발급처: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접수일 기준 유효해야 함
② 경영혁신마일리지	최대 3점	▶ 경영혁신마일리지 확인서 ※ 500마일리지당 1점
③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선정 기업('22~'25년)	1점	▶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확인서 ※ 발급처: 소상공인24(sbiz24.kr)
④ 동행축제 선정상품('25년)*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2025년 동행축제 선정상품(동행제품)	1점	▶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전담기관에서 확인)

6. 문의처

□ 문의처(전담기관)

○ (공고 등 사업 관련 문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정책매장운영팀

- (이메일) dutyfree@kodma.or.kr / (유 선) 032-743-5191, 5184

○ (참여신청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판판대로 고객센터

- (유 선) 02-2656-9021

7. 유의사항

□ 참여신청 및 평가·선정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 미충족, 참여신청서 허위·고의누락 기재, 증빙서류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신청접수 제외·중도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참여신청 상품이 '참여신청서·신규입점 제안상품 리스트에 작성한 상품'과 '온라인 상 등록·선택한 상품'이 동일하도록 유의해야 하며, 불일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단, 참여신청서에는 전체 신청상품 중 대표상품 1개만 작성)
- 필수서류 미제출의 경우 심사·평가에서 제외됨
- 사업신청자 및 참여자(기업, 대표자 등)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 신용조회 및 판로지원플랫폼(판판대로)에 기업·제품 정보 제공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내용은 판판대로(fanfandaero.kr) 홈페이지에 등록한 내용만을 인정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 정보 변경 불가
- 평가항목 등 평가기준은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음
- 공고내용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 신청기업에게 귀속됨

□ 선정 후 유의사항

- 사업에 선정된 기업과 사업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연락두절, 서류제출 거부 등)
- 사업에 선정된 기업 및 참여를 완료한 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참여신청서 허위·고의누락 기재, 증빙서류 누락, 중복수혜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참여대상 기업 및 참여기업은 지원사업 진행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사업 진행 중 및 종료 후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한 성과 관리·조사에 협조 필요

-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판판면세점 입점계약을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료하여야 지원사업 참여가 확정됨

※ 선정 기업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입점계약이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 사업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정 취소 처리 가능

-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입점계약 체결 시 「제조물(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을 제출하여야 함

- 입점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선정제품의 납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료하여야 함

※ 참여기업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납품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 사업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정 취소 처리 가능

- 선정제품의 입점 매장은 참여신청 단계에서 참여기업이 선택한 매장으로 배정되나, 사업 운영 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의 운영 정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변경된 사항을 따라야 함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 규정」, 「관세법」, 「항공보안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별지 제1호 서식】 참여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참여신청 약약서
- 【별지 제3호 서식】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별지 제4호 서식】 가점 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매장) 참여신청서

기 업 정 보	기업명		필수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필수 기재	
	대표자 성명		필수 기재		법인등록번호		해당 시 기재	
	대표자 연락처		필수 기재		주요품목(제품)		필수 기재	
	설립일자		0000 년 00 월 00 일		업태/업종		필수 기재	
	본사주소		필수 기재					
	기업규모		☐ 중기업 ☐ 소기업 ☐ 소상공인 ☐ 특례대상 중견기업					
	홈페이지		☐ 보유 (www. _____) ☐ 미보유					
	회사소개		간략하게 기재 (공백포함 100자 이내) ※ 글자모양 변경 불가 (현 설정 - 맑은고딕 글꼴, 11pt, 장평 95%, 자간 -2% / 줄간격 150%)					
	담당자	성명	필수 기재		직위		필수 기재	
		소속부서	필수 기재		이메일		필수 기재	
		전화번호	필수 기재		휴대전화		필수 기재	
	기업 현황정보		2000년(오름차순)		2000년		2000년	
고용인원		000 명(정규직 기준)		000 명(정규직 기준)		000 명(정규직 기준)		
매출액		000 백만원		000 백만원		000 백만원		

신청 제품 정보	제품명(모델명)	필수기재		소비자가	0,000 원
	출시일자	0000	년 00 월 00 일	제품규격	가로·세로·높이, 중량 등
	제 품 군	필수기재		제품타깃	필수기재
	원산지(지역)	필수기재 (시·군·구까지 기재)		제품 매출액	(전년 기준) 000 백만원
	판매가 (부가세 제외)	필수기재 ※ 판판면세점 입점 시, 책정예정인 판매가(원 단위)		공급가 (수수료 제외)	필수기재 ※ 판판면세점 입점 시, 책정예정인 공급가(원 단위)
	HS코드	필수기재 ※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 가능		영문 상품명	필수기재
	온라인판매URL	해당 시 기재			
	제품생산 여부 및 생산판매 형태	☐ 여 (☐ 자체생산 (자사 공장 소재지, 시군구까지 기재) ☐ OEM 생산) ☐ 부 (☐ 위탁판매 (제조업자명, 소재지, 시군구까지 기재) ☐ 직매입)			
제품 소개 (1,000자 내외)	○ (기재내용) 신청 상품 관련 목표시장 내 경쟁 제품과의 차별성, 특징, 장점, 기술력 등 기재 ※ 글자모양 변경 불가 (현 설정 - 맑은고딕 글꼴, 11pt, 장평 95%, 자간 -2% / 줄간격 150%)				(제품 사진 첨부)

유 통 정 보	입점 채널	온 라 인	입점채널명 작성(오픈마켓명, 종합몰명 등)(최근 3년간) ※ ex. ○○○('22), ○○○('22), ○○○('23), ○○('24)
		오프라인	입점채널명 작성(면세점,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 등)(최근 3년간) ※ ex. ○○○('22), ○○○('22), ○○○('23), ○○('24)
		기 타	입점채널명 작성(홈쇼핑, 인포모설 등 기타 입점채널 작성)(최근 3년간) ※ ex. ○○○('22), ○○○('22), ○○○('23), ○○('24)

신 청 정 보	사업 신청사유 및 지원사업 필요성	○ (기재내용) 사업 필요성, 참여의지 등을 작성 ※ 글자모양 변경 불가 (현 설정 - 맑은고딕 글꼴, 11pt, 장평 95%, 자간 -2% / 줄간격 150%)
	지원 효과	○ (기재내용) 지원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 향후 매출로 연계 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등을 작성 ※ 글자모양 변경 불가 (현 설정 - 맑은고딕 글꼴, 11pt, 장평 95%, 자간 -2% / 줄간격 150%)
	기대 효과	○ (기재내용) 현재 국내·외 판로 현황, 지원사업 참여 이후 추가 판로개척 계획 또는 향후 비즈니스 모델 등을 작성 ※ 글자모양 변경 불가 (현 설정 - 맑은고딕 글꼴, 11pt, 장평 95%, 자간 -2% / 줄간격 150%)

당사는 중소벤처기업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시행하는 2025년도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매장)에 참여하기 위하여 동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내용 및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보조금 상환 및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25 년 00 월 00 일

기업명 ○ ○ ○ ○ ○ ○ 대표 ○ ○ ○ (직인)

※ 유의사항

- (1) 참여신청서,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기재한 경우 탈락
- (2) 참여신청서 서식(항목별 크기, 글자모양 등) 변경 불가

※ 필수 제출서류: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대표이사 귀하

확 약 서

-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시행지침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정책 및 제반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따르겠습니다.
- 지원사업을 통해 취득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총괄기관,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지원사업 참여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총괄기관,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이 지원사업의 실적 및 성과 등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제출하겠습니다.
-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동일·유사분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함을 확인하며, 당해 연도에 정부 보조금으로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지원사업 제외 기업 기준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안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당사(대표자, 실무담당자)는 “2025년도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매장)”에 참여함에 있어 위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및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조회에 대한 동의]

수집 및 이용·제공 목적	- 마케팅지원사업 평가·선정, 지원 효과 분석, 만족도 조사
수집 항목	- 대표자 및 사업 참여 인력의 정보(이름, 소속·직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상호, 업종·업태,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설립연월일, 본점·영업소 등 소재지, 연락처(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재무상황(매출액, 재무제표), 고용인원, 지원사업 참여 전·중·후 유통채널 거래현황, 마케팅지원사업 신청 서류에 기재된 개인(기업)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일로부터 5년간(보유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정보 수집·이용·조회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마케팅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마케팅지원사업 수행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기업)정보를 수집·이용·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기업)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마케팅지원사업 수행기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	- 마케팅지원사업 평가·선정, 지원 효과 분석, 만족도 조사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대표자 및 사업 참여 인력의 정보(이름, 소속·직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상호, 업종·업태,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설립연월일, 본점·영업소 등 소재지, 연락처(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재무상황(매출액, 재무제표), 고용인원, 지원사업 참여 전·중·후 유통채널 거래현황, 마케팅지원사업 신청 서류에 기재된 개인(기업) 정보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 간	- 정보 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간(보유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마케팅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마케팅지원사업 수행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기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제공 목적	-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이용 항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수집·이용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수집·이용 기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기업정보의 파기	- (파기대상)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필수 등록 사업으로 확정될 경우에만 제공하며, 미등록 사업일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장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며,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제공에 관한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 년 00 월 00 일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000000 - 00000000 연락처 () 0000 - 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 - 00 - 00000 대표자 ○ ○ ○ (직인)

담당자 ○ ○ ○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대표이사 마케팅지원사업 수행기관 귀하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매장) 참여신청 가점 확인서

당사는 “2025년도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매장)”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항목의 가점에 해당하는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항 목	점 수	내 용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입니까? ☐ 예 ☐ 아니오
경영혁신마일리지 ¹⁾ (500마일리지당 1점)	최대 3점	경영혁신마일리지를 보유한 기업입니까? ☐ 예 (☐ 1점 ☐ 2점 ☐ 3점) ☐ 아니오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22~’25년)	1점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22~’25년)에 선정된 기업입니까? ☐ 예 ☐ 아니오
2025년 동행축제 선정상품 ²⁾	1점	2025년 동행축제 선정 상품(동행제품)입니까? ☐ 예 ☐ 아니오

위 작성한 가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오며, 제출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의 모든 내용 및 문서는 허위사실이 없으며 확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기업명 ○ ○ ○

대표자 ○ ○ ○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귀하

1) 경영혁신마일리지: 자발적으로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정부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https://www.mileage.or.kr/>)

2) 동행축제 선정상품: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2025년 동행축제 선정상품(동행제품)인 경우에 가점사항 해당